



2013년도 산재예방 지출예산, 올해보다 2.4% 증액

최근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재해예방 분야의 지출예산이 올해 대비 2.4%(70억 8,400만 원) 증액된 3,065억 7,300만 원으로 계상됐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지원대상 확대로 올해 741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10% 증가하며, 사고성재해예방은 안전인증, 자율 안전확인신고대상 확대 등에 따라 올해 399억 원에서 내년 435억 원으로 9% 늘어난다. 이중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예산은 올해 대비로 평균 62.2% 늘어난다.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8.4% 증가한 30억 원,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에는 84.5% 늘어난 29억 3,300만 원,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에 대해서는 무려 388.5% 늘어난 12억 3,100만 원이 각각 책정됐다. 위험기계기구안전검사에 대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6억 1,800만 원이다.

한편, 위험성평가사업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정됐던 예산은 117억 6,0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전면 시행되면서 이보다 66.6% 증가한 29억 3,300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계획 되어 있다.

국내 화학물질 85%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85%가 독성에 대한 정보공유 없이 유통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유해화학물질 유통체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위해성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14만 3,000t(2,985개 업체)에 달한다. 지역별 배출 비율은 경남 23.1%, 울산 15.7%, 경기 14.4% 등의 순이다.

화학물질 사고는 1996년 이후 연평균 6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독물에 의한 사고는 연평균 12건이다.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이 5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정전기·스파크 21%, 운전자 부주의 11% 등이다. 사고원인 물질은 톨루엔 18건, 염산과 유사취발유 15건, 황산과 시너 12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43,000여 종에 이르는 화학 물질의 85%는 기초 독성정보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원은 각 물질의 유해성을 발암, 아토피 악화, 내분비계 장애 등 질환유형별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 주민, 기업, 지자체, 환경청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체별 규모와 위치, 주변현황, 소방서와의 거리 등 사고대비 매뉴얼을 작성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 7개 법률 14개 기관으로 나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통합할 필요도 있다”라며 “또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사고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근로자건강센터, 내년 5개소 신규 설치

내년에 5개소의 근로자건강센터가 신규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업환경의학전문, 물리치료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운동 지도사 등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병이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상담 및 간단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안전보건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해 4월 인천에 처음 개소한 데 이어, 경기(시흥), 광주, 대구, 창원 등 전국적으로 5개소가 설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 근로자 건강센터를 내년 한 해 동안 5개소를 신규 설치키로 했다. 그에 대한 예산을 67억여 원 배정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2015년에도 5개소를 추가 설치한 이후 2015년에는 8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방식 의무화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지지방식이 벽체 지지방식으로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11월 2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에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타워크레인이 아무런 지지 없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높이로 보통 18~30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벽체지지 또는 와이어로프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작업반경 등을 이유로 와이어로프지지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의 경우 안전에 취약하고 붕괴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원칙적으로 벽체지지 방식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사항이 없으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도 건설업의 3톤 이상 타워크레인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외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일원화시키는 한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단, 건축물 등이 없어 벽체지지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와이어로프의 지지점은 4개소 이상 동일한 각도로 설치토록 하고, 충분한 강도와 장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 규정을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및 조선업 등 건설업 외의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T형 크레인이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사가 많아 작업반경이 넓은 T형 크레인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며 "T형은 L형에 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 외국과 달리 별도로 지지 방식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전인증 'S마크' 발급 건수 1만 건 달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부품류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S마크' 발급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오성엘에스티(주)의 LCD 판넬 시험 및 검사장비가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난 1997년 S마크를 도입한 이래 발급 건수가 1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Safety)의 머리글자를 딴 S마크는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에 안전한 기계·부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자율인증제도다.

현재까지 총 2,909개 업체가 1만 건 인증을 취득했으며, 신청 물량을 감안할 때 올해 약 1,400건의 추가 인증이 예상되고 있다. S마크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의 배경에는 안전보건공단의 원스톱 지원이 있다. 공단은 최근 영국·독일·프랑스 등 9개 해외 인증기관과 업무협력을 맺고, S마크 인증 취득 시 CE마크 등 해외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S마크 인증을 하면 제품의 품질력 향상은 물론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배분 권고

'고용부 수용 불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선화한 것일까.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11월 14일 고용부가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배분 권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고용부 장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고용부는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그 방향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단 예산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산재입증 책임을 배분할 경우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비용과 산재보상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산에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입증책임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업무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무분별한 보상 및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 등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에 따라 개선 중에 있다"며 "사업주 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사업주 날인 없이도 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서식 변경과 현장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 입증과 관련해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룰 것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